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54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6월 21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“약제”는 포괄적 의미로 화학적 약제뿐만 아니라 친환경 약제도 포함할 수 있어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,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는 대안으로는 임업적 방제와 기계·물리적 방제 등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제를 친환경 방제와 함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 골자

- “경우 약제 등을 이용한”을 “경우”로, “방제를 우선적으로”를 “방제 등의 방법을”로(안 제10조의2제2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의2제2항 중 “경우 약제 등을 이용한”을 “경우”로, “방제를 우선적으로”를 “방제 등의 방법을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0조의2(도시숲등의 친환경 방제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<u>경우</u> 약제 <u>등을 이용한</u>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고, 친환경 <u>방제를 우선</u> <u>적으로</u>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의2(도시숲등의 친환경 방제) ① (현 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 <u>경우</u> ----- ----- ---- <u>방제 등의 방</u> <u>법을</u> ----- -----.</p>